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1997. 11. 13.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47호)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골자

-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의 명칭을 각각 일비 및 숙박료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마포구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일비 및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함.
(안 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877호) 제15조제1항
- 국내여비규정(1996. 12. 31 대통령령 15,247호) 제15조제1항 [별표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에서 현지교통비,숙박비를 각각 일비,숙박료로 한다.
-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6조 제1항관련)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의 장 부 의 장	10,000	41,000
의 원	10,000	19,500

- 별표1의 비고 제1호에서 현지교통비는 일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의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요금,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요금) 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종류) ① _____ 일비·숙박료 _____.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 (단위:원)							(별표1)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생 략)		6,500	37,500	생 략	의장 부의장	(현행과 같음)		10,000	41,000	(현행과 같음)							
의원	(생 략)		6,500	18,000	생 략	의원	(현행과 같음)		10,000	19,500	(현행과 같음)							
비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여행(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비고 : 1. _____ 일비와 _____.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1997.10.

제출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경찰서 파견 방범원이 전원 구청으로 복귀 구청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구청업무수행에 적합한 명칭으로 직명을 변경 사기진작 및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 소탕 삭제(안 제5조)
-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안 별표)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 5,069 호) 제15조, 제1항 3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불필요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1 종	2 종	경 노 무	근무상한연령
지도원			53세
		사 환	23세

비고 : 지도원은 이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가를 임용함에 고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1)법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방법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고용직 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별표]</p> <p><u>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 종</td><td>2 종</td><td>경노무</td><td>근무상한연령</td></tr> <tr> <td>방법원</td><td colspan="3">(생 탁)</td></tr> <tr> <td></td><td></td><td></td><td></td></tr> </table> <p>비고 :방법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1 종	2 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생 탁)							<p><식 제></p> <p>[별표]</p> <p><u>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 종</td><td>2 종</td><td>경노무</td><td>근무상한연령</td></tr> <tr> <td>지도원</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 <tr> <td></td><td></td><td></td><td></td></tr> </table> <p>비고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p>	1 종	2 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지도원	(현행과 같음)						
1 종	2 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방법원	(생 탁)																								
1 종	2 종	경노무	근무상한연령																						
지도원	(현행과 같음)																								